

문서번호 TWP-A163 규정 2011. 12. 09.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1/8

전기안전관리 운영 규정

목 차

제1장 총칙

제2장 안전관리업무의 운영관리체계

제3장 전기안전관리

제4장 유지 보수

제5장 운전 및 조작

제6장 사고 및 재해대책

제7장 공사계획과 실시

제8장 기록

제9장 책임의 한계

부칙

별표

작성부서).	시설과		제정일자	4	2011. 12. 09	
구 분	작 성	!		검	토			승 인
직 책	담 당	ł 당						총 장
서 명								
일 자								



규정 전기안전관리 운영 규정

문서번호	TWP-A163			
제정일자	2011. 12. 09.			
개정일자				
개정번호 ()	페이지 2/8			

		개정이력
개정 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0	2011. 12. 09.	- 전기안전관리 운영규정 제정

	FII
18 81	TO EL
7	-77
To.	
TON	UNIVE

무서번호 TWP-A163 규정 2011. 12. 09.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() |페이지| 3/8

전기안전관리 운영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73조,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동워대학교(이하 "이 대학교"라 한다)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·유지 및 운용과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전기안전관리자"라 함은 전기사업법령에 의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선임 신고된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사와 전기안전관리원을 말한다.
- 2. "전기안전관리사"라 함은 전기분야 기술사자격소지자나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에 실무경력 2년 이상자나.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4년 이상자 중 에서 법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.
- 3. "전기안전관리원"이라 함은 전기분야의 기능사 자격 이상자로서 법에 의해 선임된 자를 말 하다.
- 4. "전기설비"라 함은 전기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말한다.
- 5. "전기수용설비"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로서 책임분계점으로부터 각종 전기보호기 구를 거쳐 배전반, 분전반, 전선로를 거쳐 전기사용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 또는 계전 기의 1차측까지로 하고. 전기사용기기는 제외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이 대학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준수) 전기설비의 설치자 및 이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전기관계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.

제2장 안전관리업무의 운영관리체계

제5조(전기안전관리 주관부서 및 업무조직) ① 총장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조직의 장이 된다.

- ② 전기안전관리 주관부서장은 사무처장으로 한다.
-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종사자 중 전기관계법령에 적합한 인원을 선임한다.
-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의 운영을 관리·감독 한다.
- ⑤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운영에 대한 권한이 구분되어지는 구내의 입주업체 및 독 립기관들의 안전관리 선임업무는 제외한다.



규정 문서번호 TWP-A163 제정일자 2011. 12. 09. 개정일자

개정번호 0 페이지

4/8

전기안전관리 운영 규정

제6조(안전관리업무의 감독) ① 전기설비의 공사,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는 사무 처장이 관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감독에 임하도록 한다.

②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전기설비의 설치자 및 이 대학의 교직원은 전기관계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전기설비의 공사·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
- 2.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·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
- 3. 전기설비의 운전·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
- 4.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
- 5.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
- ③ 전기안전관리원의 직무는 안전관리사를 보조한다.
-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설비의 공사,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감독
- 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 의무) ① 자가용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- ②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자가용전기 설비의 유지·운영과 안전에 관계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법령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.

제8조(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시의 조치) 전기안전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재할 때에는 그 업무를 대행할 자를 반드시 지명하여 두어야 한다.

제3장 전기안전관리

제9조(안전교육 및 훈련)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에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행하여야 한다.

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재해 기타 전기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안전지시의 준수) 교직원은 전기설비의 공사,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을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01	CH o
10	-0. kg
P A	
CHON	UMIVER

무서번호 TWP-A163 규정 2011. 12. 09.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() 페이지 5/8

전기안전관리 운영 규정

제4장 유지 보수

제11조(순시, 점검 측정) ①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한 순시, 점검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1. 전기안전관리자는 일상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전기시설 점검 일지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발전기 점검 일지를 작성하고,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- 2. 전기안전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위하여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고 이를 보 관하여야 한다.
- 3. 전기안전관리자는 정밀점검을 위하여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고 이를 보 관하여야 한다.
- ② 순시, 점검 또는 측정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불합격한 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해당 전기설 비의 수선, 개조, 이설 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항상 기 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사고재발장비) 사고 기타 이상 발생 시에는 필요에 따라 정밀검사를 행하고 그 원인 을 규명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전기안전검사)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기 안전 검사를 대행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- ① 검사기관: 한국전기안전공사
- ② 검사대상 및 주기
- 1. 정기검사 : 자가용전기설비 전체 기본검사 (3년 1회 ; 전기사업법 제65조)
- 2. 사용전검사 : 설치 또는 변경되는 전기설비 (사용 전 1회 이상 ; 전기사업법 제63조)
- 3. 정밀검사 : 자가용전기설비 전체 정밀검사 (3년 1회 ;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실시)

제14조(순회점검 또는 검사 후 조치) 전기안전관리자는 순회점검 또는 검사대행기관의 안전 검사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해당 전기설비를 수선, 개조이설 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항상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.

제5장 운전 및 조작

제15조(운전조작 등)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운전 또는 조작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별 도로 정하여야 한다.

O U D	그 거	문서번호	TWP-A163
10 - 10 mg	#정	제정일자	2011. 12. 09.
OF CATON UNITED	거기아기키 ㅇ여 그것	개정일자	
	전기안전관리 운영 규정	개정번호 0	페이지 6/8

- 1. 종합변전실, 각 지역 변전실, 수 배전 전로 등에 대한 감시
- 2. 평상시 및 사고 기타의 이상시에 운전 또는 조작을 하여야 할 전기기기의 조작순서 및 운전 방법과 지휘계통에 대한 연락요령
- 3. 자가용전기설비의 사고의 수리, 사용정지, 사용제한, 등의 응급조치와 보고 또는 연락요령
-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이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연락망은 관련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변전실, 사무실이나 기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③ 수전용 차단기(CH)의 조작은 필요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관련부서와의 연락을 행하여야 한다.

제6장 사고 및 재해대책

제16조(위험표시 및 측정·장비류 정비) ① 수·변전실, 배전실,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 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측정기구 및 장비류는 전기실에 적정하게 보관하고 정비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7조(방재체계) ① 전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전기실 관련 근무자는 즉시 사고 구간의 확인·점검과 동시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 통지하여 비상조치를 받는다.

- ②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항의 비상재해발생시 사태를 장악하여 자가용전기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지휘감독을 즉시 개시하고 복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야간에는 비상연락망에 의거 복구에 필요한 관련 근무자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재해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송전을 정지 할 수 있다.

제19조(재해발생 보고)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재해발생일시, 장소, 원인, 피해상황, 조치내용 등을 소속기관의 상임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.

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재해발생 사태를 분석하여 사고의 파급이 송전선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 한국전력공사의 관계부서에 연락하여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.

제7장 공사계획과 실시

제20조(공사계획) ① 전기설비의 설치, 개조 등 공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

문서번호 TWP-A163 규정 제정일자 2011. 12. 09.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7/8

전기안전관리 운영 규정

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설비의 중요한 수선 및 개 선공사 계획을 입안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1조(공사실시) ①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는 그 공사의 내용에 따라 작업책임자를 선정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를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할 경우에는 항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, 그 공사가 완성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검사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인 수하여야 한다.

제8장 기록

제22조(기록) ① 전기설비의 운전상황, 공사,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다.

② 주요전기기기의 보수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23조(설계도 및 서류의 정비)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, 시방서, 취급설명서 등은 5년간 정 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24조(수속 서류 등의 정비) 관계관청이나 전기사업자 등에게 제출한 서류나 도면 기타 주 요문서는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9장 책임의 한계

제25조(책임의 한계) ①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와의 안전관리상의 책임한계점은 설 비한 개폐기의 2차측 단자로 한다.

② 전기수용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범위는 분전반에서 전선로를 거쳐 전기사용기 기에 공급하는 전원차단기 1차측까지로 한다.

제26조(안전관리 책임) ① 이 규정에 정한 전기안전관리 책임은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속한다. ② 전기안전관리원은 전기안전관리사의 확인을 받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사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P) II Q	그지	문서번호	TWP-A163
40 - TO TO	규정 -	제정일자	2011. 12. 09.
OF THE PARTY OF TH	자기이자리기 ㅇ 여 그저	개정일자	
ON DHIA	전기안전관리 운영 규정	개정번호 0	페이지 8/8

③ 전기안전관리자가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전기안전책임은 그 교직원에게 속한다.

제27조(관련문서) 이 규정의 관련 문서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전기사업법
- ② 학교시설물 사용 및 관리 규정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전기시설 점검 일지						장	과징	가 차장	처장
	20 년 월	결 재							
	건물명						비고		
H]용 변압기용량(kW)								
	전력감시시스템								
	큐비클상태								
	개폐기 및 차단기								
	조작,램프,스위치등								
수 변	선로상태								
전	단자상태								
반	보호계전기								
	변압기온도								
	소음,진동,냄새등								
	큐비클상태								
	개폐기 및 차단기								
	조작,램프,스위치등								
	선로상태								
정	단자상태								
류 기	입력전압(V)								
반	출력전압(V)								
	충전상태								
	교체시기								
	출고일자								
	제품								
	큐비클상태								
	개폐기 및 차단기								
배	조작,램프,스위치등								
전 반	선로상태								
	단자상태								
	보호계전기								
	전기실 환경상태								
	전기실 통제상태								
	기타								

[별지 제2호 서식]

	발전	기	점검 잍	결 계	장 과 7	장 차 장	처 장	
4	20 년	월	일 () 요약	일 회차	재			
내.]물명 						
71	<u>설</u> 치년도							
용량(kw)								
	운전방식		자동/수동	자동/수동	자동/수동	자동/수동	자동/수동	
	운전시간		분	분	분	분	분	
		R						
운 전	전압(V)	S						
		Т						
	주파수()	Hz)						
	운전상1	태						
റി	종류		경유	경유	경유	경유	경유	
연 료	탱크용		200 ℓ	200 ℓ	200 ℓ	200 ℓ	200 ℓ	
	잔류량		%	%	%	%	%	
외	누수/누유 상태							
관	단자 체결상태							
	배관 연결상태							
	전압(V							
밧	충전상1							
데 리	교체시기							
	출고일기	자						
	제품							
<u>운</u>	각종 계							
전 반	각종 램							
	각종 스위							
2	냉각수 및 부동액							
소 모	오일필터							
자	엔진오일							
재	공기필터							
연료필터								
	난방용 히터							
	기타							